

오산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(폐지)

제정 2011년 12월 28일 조례 제1187호
폐지 2025년 11월 20일 조례 제2319호
(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)

오산시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

제정 2010년 9월 30일 조례 제1109호
전부개정 2025년 11월 20일 조례 제2319호
(제명개정)

본문생략

부칙 <2025. 11. 20 조례 제2319호 전부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다음 각 호의 조례를 각각 폐지한다.

- 생략
- 생략
- 「오산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」
- 생략
- 생략
- 생략
- 생략

제3조 생략